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10호
2. 발 의 자 : 홍국표 의원(찬성 33명)
3.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4.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II . 제안이유

-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고령화 등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시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보호·육성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또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비상설로 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현실 적합한 지원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도시형소 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재원 확보 노력에 관한 책무 규정,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도시형소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됨.

2. 주요 개정사항

가.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2는 시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¹⁾은 지방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형 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2조의2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형소공인 관련 단체로부터의 의견 청취 신설(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역과 업종 부문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신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 및 계획의 자문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의 구성 등을 명시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며, 동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낭설을 방지하고 조례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다만 도시형소공인²⁾은 소상공인의 일부이므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³⁾와 그 기능면에 있어 중복의 우려도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도시형소공인과 소상공인 관련 조례 및 담당 부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더욱이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형소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2)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의2(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입법조사관	연락처
김수은	02-2180-8064